

# 출자증권가압류신청

사 건 2000즈단000호 채권가압류

채 권 자 1. 〇①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020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기업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〈〉〈〉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제3채무자 ■■설비건설공제조합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이사장 ■■■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청구채권의 표시

금 14,000,000원{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채권(채권자 ○① ○의 금 7,000,000원, 채권자 ○②○의 금 7,000,000원의 합계)

### 가압류하여야 할 출자증권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.

# 신 청 취 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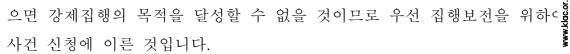


- 1.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출자증권에 기초한 조합원 지분을 가압류한다.
- 2.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, 출자금의 반환, 잔여 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별자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이 유

- 1. 채무자는 건설설비업을 하는 법인이고 채권자 ○①○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20
   ○○. ○. ○○.까지 대리로, 채권자 ○②○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○.
   ○.까지 현장관리인으로 각각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.
- 2. 채권자 ○①○는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20○○. 8월분 임금 1,000,000원, 9월분 임금 1,000,000원, 10월분 임금 1,000,000원과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사이의 퇴직금 1,000,000원을 받지 못하였고,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(365일)의 상여금 3,000,000원(기본급 금 1,000,000원과 연간 상여금 300%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하면, 금 1,000,000원×300%×365/365)의 합계 금 7,000,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3. 채권자 ○①○는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로부터 퇴직금 1,000,000원과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(730일)의 상여금 6,000,000원(기본급 금 1,000,000원 과 연간 상여금 300%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계산하면, 금 1,000,000원×300%×730/365)의 합계 금 7,000,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4. 채권자들은 위 임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□□노동지방사무소에 신고하자 채무자는 상여금을 먼저 우선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자 상여금은 물론 그 이후의 임금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
- 5. 채무자는 일부의 근로자들에게는 위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최근에는 공사대금 수금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들은 임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이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채무 자가 언제 이행할지 기대할 수 없고 별지목록 기재 출자증권을 가압류하지 않



6. 한편, 채권자들은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에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담보제공은 무공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거나,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,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소 명 방 법

1. 소갑 제1호증 체불금품확인원

1. 소갑 제2호증 사실확인서

#### 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채권자 1. 〇①〇 (서명 또는 날인) 2. 〇②〇 (서명 또는 날인)

### ㅇㅇ지방법워 귀중



# 가압류할 출자증권의 표시

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출자금의 증권

1. 출자 1좌금 : ○○○원

2. 출자좌수: ○○○좌. 끝.

1.



# 가압류신청 진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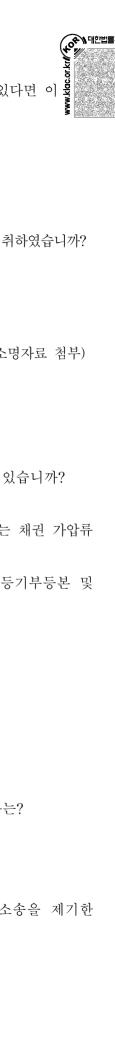
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.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 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,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

	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
	20
	※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	◇ 다 음 ◇
	. 피보전권리(청구채권)와 관련하여 가.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? □ 예
	□ 아니오 → 채무자 주장의 요지 : □ 기타 :
L	나.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,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? (소명자료 첨부)
τ	다.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? (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)

#### 2.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

□ 예 □ 아니오

- 가.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?
- 나.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?



다.	채권자는	신청서에	기재한	청구채권과	관련하여	취득한	담보가	있습니까?	있다면	이 :
	가압류를	신청한 ㅇ	기유는 무	'엇입니까?						

라. [채무자가 (연대)보증인인 경우]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?

마. [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]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? (소명자료 첨부)

- 바. [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]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?
  - □ 예 □ 아니오 →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
- 사. ["예"로 대답한 경우]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,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  - □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→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
  - □ 기타 사유 → 내용:
- 아. [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]
  -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, 가액은?
  -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? 그 결과는?

#### 3. 본안소송과 관련하여

- 가.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?
  - □ 예 □ 아니오
- 나. ["예"로 대답한 경우]
  -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·사건번호·사건명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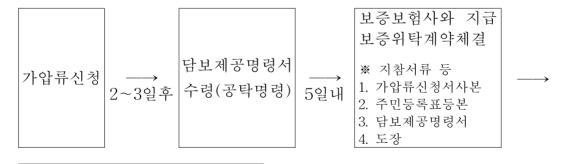
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?

다. ["아니오"로 대답한 경우]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?
□ 예 →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:
□ 아니오 → 사유 :
4.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
가.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(금액 불문)을 원인으로,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
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? (과거 및 현재 포함)
□ 예 □ 아니오
나. ["예"로 대답한 경우]
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·사건번호·사건명은?
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(취하/각하/인용/기각 등)는? (소명자료 첨부)

다. [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]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(소 명자료 첨부)

제출법원	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당사자목록, 청구채권목록, 가 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)
불복절차 및 기간	<ul> <li>(채권자)</li> <li>・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)</li> <li>・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( 민사소송법 제444조)</li> <li>(채무자)</li> <li>・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(민사집행법 제283조), 본안의 제소명령(민사집행법 제287조)</li> <li>・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・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.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</li> </ul>
	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.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기 타	·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 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함(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).

# ※ 집행절차



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(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)



- ※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(부동산·자동차·채권에 한함)
  - 1. 부동산, 자동차,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 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(보증서) 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
    - ★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
  - 2. 보증금액
    - ○부동산, 자동차 : 청구채권액(원금)의 1/10(100원미만 버림)
    - ○채권: 청구채권액(원금)의 1/5(100원미만 버림)
  - 3.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예)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(○○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○○○ ○○○ ○○○호)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